

수실버간호센터/수실버주간보호 운영규정(요약)

(목적) '수실버간호센터'와 '수실버주간보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입소어르신들의 통합 서비스와 안녕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기능회복 및 유지, 증진에 기여하고 어르신들의 마지막 삶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시설의 기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 본원의 조직도와 업무분장표에 따른다.

(회계) 재무·회계 규정은 「사회복지법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입소 또는 이용정원 및 모집) 입소정원은 시설은 9명, 주간보호는 24명 정원으로 한다.

입소대상은 시설급여 등급과 재가급여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서 모집한다.

(입소 또는 이용계약)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며, 변경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계약의 해지)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과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수가인상, 등급변경, 본인부담률 변경 등에 따라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면, 그 외 이용료 및 비용은 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 급여서비스 외 프로그램 제공에 따르는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다.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 보호를 한다.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협력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진료를 활용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병원 후송 및 전원에 대해 신원인수인(보호자)과 협의 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시설의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하며,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다음의 경우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운영규정 개정)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이용료 및 비용, 운영규정 등을 개정할 수 있다.